

검 토 보 고

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.

☐ 제안이유

-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활동 및 공공집회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하나 사용계약이 없을 경우 1일전이라도 사용료를 납부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.
(안 제3조 제2항)

☐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1일전까지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
-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편의증진과 회관의 활용도 증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